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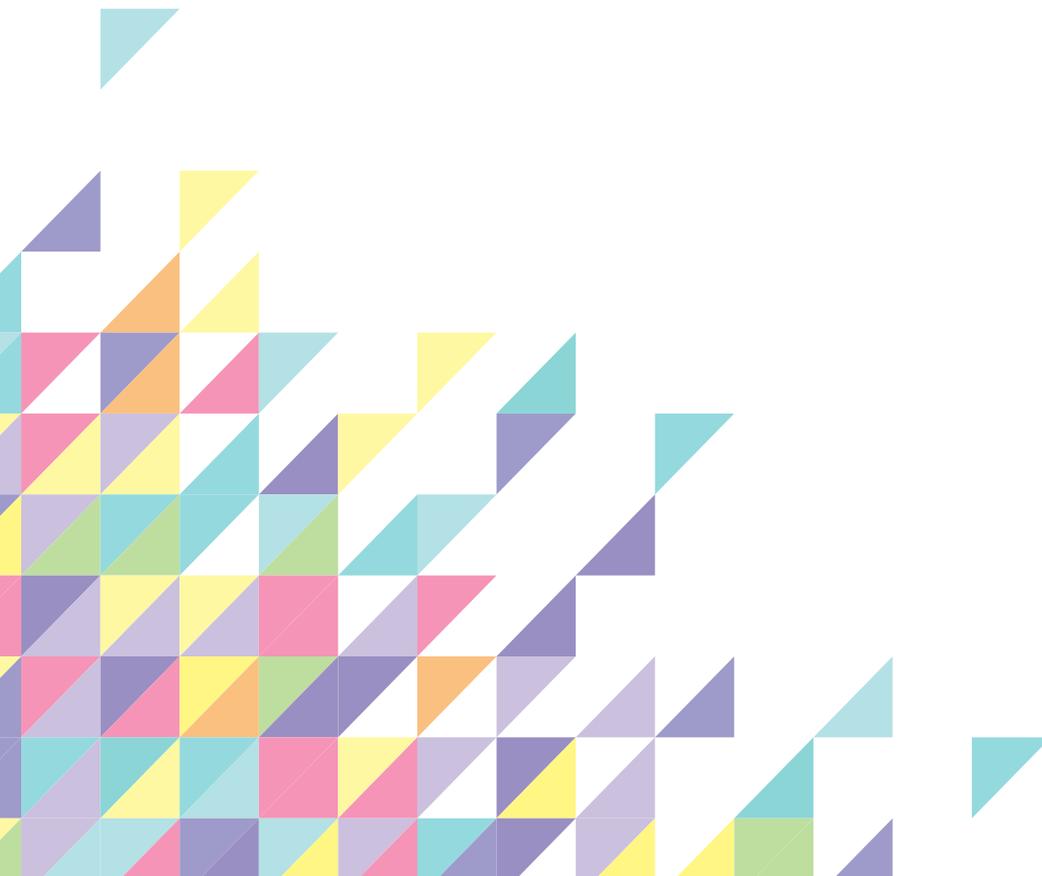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본 지침은 방송영상제작산업의 공정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의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하고, 형식적인 사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각 상황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안내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 핵심조항을 활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제1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

1.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9
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10
3.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	11
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12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하도급·업무 위탁 계약서	14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21

제2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6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55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64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89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115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40

부록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167
-------------------------	-----

01

제1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

I.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방송산업·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방송영상 제작·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 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방송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스태프·방송작가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6종의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관계법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II.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사·제작사와 방송작가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여 방송작가의 권리 보호 및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마련을 위해 제정

III. 어떤 표준계약을 사용해야 할까?

상황	사용 필요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또는 구매 계약이 필요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역무 또는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이 필요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업무위탁 계약서
방송작가의 방송원고 집필활동 및 방송원고 사용과 관련된 계약이 필요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IV.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관계법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 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① 제9조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한 방송프로그램이어야 한다.

1. 외주제작사가 작가(방송프로그램의 극본, 구성대본 등을 집필하는 자로 여러 명이 집필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2. 외주제작사가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3. 외주제작사가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4.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조달하는 경우
5. 외주제작사가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경우

V.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서



확인하세요!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종)에서 ‘제작스태프’란?
- 연출, 촬영, 조명, 음향, 미술, 후반작업, 기타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종사자

연출	PD, AD, FD, VJ, 스크립터 등
촬영	촬영감독 및 촬영팀 / 카메라, 포커스, 그립, 지미집, 수중촬영, 드론 촬영, 데이터 매니저, 고속전송 담당 등
조명	조명감독 및 조명팀 /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장비 담당 등
음향	동시녹음 기사, 붐 오퍼레이터, PA팀 / 사운드마스터·디자이너·믹싱 등 / 음악감독 및 음악팀, OST 제작 프로듀서 등
미술	미술감독 및 미술팀 / 소품팀 / 무대디자인 및 무대기술 담당 / 의상팀장 및 의상팀 / 분장팀장 및 분장팀, 헤어팀, 특수분장팀 등
후반작업	편집감독 및 편집팀, 편집기술감독, 현장편집 / 시각효과(VFX)(특수영상감독, 특수효과, CG 포함) 담당 / 타이틀 글씨 및 타이틀 예고 제작 / 디지털 색보정(DI) 기사 및 DI팀 등
기타	이동차량(스태프, 장비, 소품 등) 담당 / 캐스팅, 무술 / 영상장비(LED포함 스크린), 구조물, 전식(전광장식) 담당 / 홍보 마케팅(메이킹필름, 스틸컷, 포스터, 티저 등) 담당/ 기타

- 제작스태프의 업무유형 및 형태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근로/하도급/업무위탁)’ 중 적절한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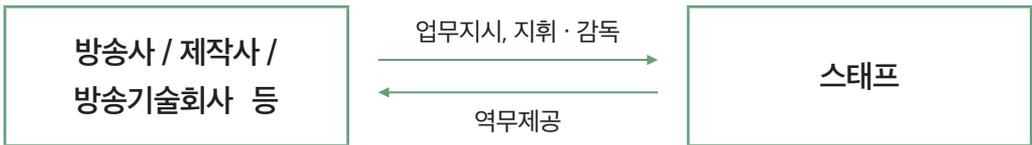
* 방송작가의 경우, 업무유형 및 형태, 집필 원고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필요성 여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 계약서’ 또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스태프가 '근로자'로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 소속 방송기술 회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알아봅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
-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 여기에서 종속적 관계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그리고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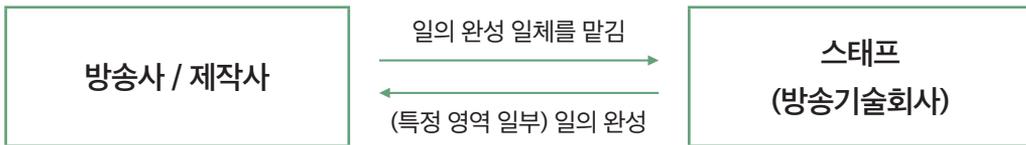
- 위와 같이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나 고용 형태(일용직, 일시적 근로관계 불문)와 무관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함

2

스태프(방송기술회사)가 ‘하도급사업자’로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특정영역 일부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도급을 받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알아봅시다!

-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 출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축약

- **용역위탁이란?**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등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출처: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제1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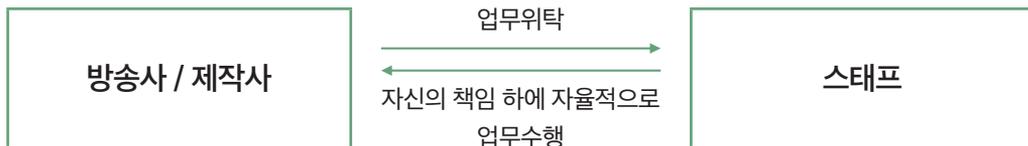
- **스태프(방송기술회사)**는 근로자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의 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제3자 스태프와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출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조(계약의 내용)

스태프가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업무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이 부적절한 유형의 스태프, 즉, ① 개인으로 움직이는 ‘프리랜서’ 형태의 스태프로서,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별도의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③ 특정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독점되지 않는 형태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이 유형에 스태프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작 일정, 업무의 내용 정도만을 제공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 등은 프리랜서인 스태프 개인이 스스로 정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함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알아봅시다!

- 스태프가 제3자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근로(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출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제2조(계약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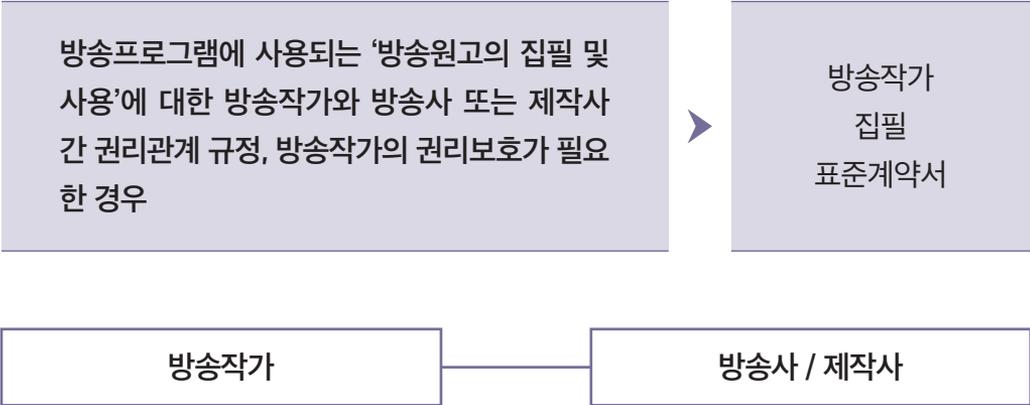
확인하세요!

-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 이 경우, 계약 체결 자체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규정은 없으나 노동분쟁 발생 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하므로,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체결한 계약의 유형·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련 법령이 직접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됨
-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상대방(방송사, 제작사, 방송기술업체 등)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 이 경우, ①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③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중 형사처벌규정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14조 제1호 위반 등) 노동청 진정의 방법으로 근로자성을 확인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
 - 다만, 대개의 절차에 있어서 최소 3개월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권리구제의 신청을 사유로 해고를 하게 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청 또는 법원에 제기 가능함

- 스태프가 일을 실제로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당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실제 이행에 나아가지 않은 근로계약의 존재의 입증 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기 전 계약을 해지당한 경우, 노무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상당을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됨(「민법」 제551조, 제390조)

VI.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확인하세요!

- 방송작가의 업무유형 및 형태, 집필 원고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필요성 여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2종)' 준용 가능
 - 방송작가가 원고 집필 외 업무를 담당하는 자료조사원, 취재작가 등으로 역할하거나, 프로그램 장르 및 업무특성 상 권리관계 규정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없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 / 업무위탁)'를 준용하여 계약서 작성
 - 특히 방송작가가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준용이 요구됨
 - 다만,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 집필에 따른 저작권은 회사(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귀속되는 점 유의 필요 (업무상 저작물)



알아봅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
-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 여기에서 종속적 관계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 위와 같이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나 고용 형태(일용직, 일시적 근로관계 불문)와 무관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함

• [참고] 19쪽 ‘확인하세요!’ 내용 참고

02

제2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공통

1. 본 장에서는 계약주체 권리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 6종별 핵심조항을 지정한다.
2. 지정된 표준계약서 핵심조항은 별도 특약이 아닌 계약서 본문(동 표준계약서의 각 조항, 별지1, 서식1)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시된 조건(본 안내문에서 '유의사항'으로 표기)이 충족될 때,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조항 지정 이유는?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가 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및 발전, ② 방송영상 제작·유통의 활성화라는 제정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약서 본문에 필수 명기되어야 할 조항 지정
- 계약주체 권리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해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된 채 활용되는 등 표준계약서의 형식적인 사용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유의사항 제시 이유는?

- 표준계약서의 본질 훼손 가능성 최소화를 목표로 표준계약서 활용 또는 준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핵심조항 활용 및 준용 시 유의사항, 관련법령, 작성 예시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내용에 대한 계약주체의 이해를 돕고자 함

I.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제4조 (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명 :
2. 제작 형식 :
3. 프로그램 주요내용 :
4. 제작 편수 : 회
(비드라마의 경우 계약 기간 : ~)
5. 방송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6. 길이 : 매 편당 분(편성시간 기준)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 연출자 :
 - 작 가 :

유의사항

•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납품 프로그램 정보 일체를 계약서에 명기한다([예시 1] 참조).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방송사와 제작사간 분쟁소지를 축소시키고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기본 사항을 명확히 하는 장치로서 각 요소별 정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2. 제작 형식) 방송프로그램의 장르, 주 제작 장소 등을 기재한다.
- (4. 제작 편수) '편', '회', '부작' 등의 단위로 명시한다. 프로그램 장르 특성 상 제작편수가 아닌 계약기간을 설정할 경우, 계약 '개시일'과 '종료일'을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작성한다.

- (6. 길이)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분’ 단위로 명시한다.
-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연출, 작가 등의 성명을 명시한다.

작성 예시

[예시 1] 제4조 프로그램 정보

1. 프로그램명 : TV 생활정보
2. 제작 형식 : 스튜디오 카메라(O) ENG(O) 6mm()
3. 프로그램 주요내용 : 건강, 여행, 운동, 음식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제작 편수 : 10편 (계약 기간 : 2019년 5월 1일 ~ 2019년 11월 1일)
5. 방송일시 : 매주 목요일 19시 00분 ~ 20시 00분
6. 길이 : 매 편당 60분(편성시간 기준)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 연출자 : 김연출
 - 작 가 : 이작가

핵심조항

제5조 (제작비) ① 제작비는 프로그램의 분량, 장르, 제작 기여도, 저작권 귀속,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는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으로 (총액 원/회당 원) 을 지급한다.

④ 방송사는 전항의 제작비용을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방송횟수에 따라 제작사에게 지급한다.

⑤ 제작사는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하고 제작비 지급자료를 (2일)내에 방송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송사는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프로그램 제작비의 (20%)/1회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5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⑦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작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에게 제작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⑧ 제작비 세부내역은 부록<서식 1>과 같다.

⑨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편성사정에 따라 증감될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다만,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 완성 분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제작비 집행 실적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제출한다.

유의사항

- 적절한 제작비 책정 및 원활한 제작비 지급을 위하여 제5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제5조의 제1항에서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책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제작비를 산정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호간에 제작비 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준수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제작비 지급 관련 사항은 제5조(제작비) 항목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작성하여 분쟁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한다.
- 제5조 제8항에 따른 제작비 세부내역은 제작사가 제출하는 견적서 또는 예산서로 같음하지 아니하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서식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예시 2] 참조).
 - 1) 항목별 산출근거 및 금액(천원)을 명기한다.
 - 2) 산출근거는 항목 특성에 따라 '단위', '수량', '단가' 등으로 제시한다.
 - 3) 각 항목과 관련되는 방송사의 지원내용을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 4) 제작사가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항목이 있을 시, 해당 사항을 구분 항목에 따라 비교란에 병기한다.
- 제5조 제9항에서 방송사 편성사정에 따른 제작편수 및 편성시간의 증감은 '방송사의 제작사 간 사전협의', '회당 제작비의 증감', '프로그램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 지급' 등을 전제한다. 증감 가능성만을 명기하고, 세 요소 중 일부만이 단서로 제시될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확인하세요!

편성시간의 증감 가능성만을 명기하고, '사전협의', '제작비 증감',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 지급' 중 일부만이 단서로 제시될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작성 예시

[예시2]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작성

<서식1>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 (천원)	방송사 지원 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 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 잘된 예

- 산출근거를 각 항목에 대한 구성요소·단가·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 항목 별 방송사 지원내용에 대해 ‘방송사 지원내용’ 란에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 및 제작사가 지원·조달한 부분은 ‘비고’ 란에 병기한 경우

구분	산출근거	금액 (천원)	방송사 지원 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메인PD x 0원 x 0회 연출 x 0원 x 0회 조연출 x 0원 x 0회	000		
원고료	메인작가 x 0원 x 0회 서브작가1 x 0원 x 0회 서브작가2 x 0원 x 0회	000		
출 연 료	주연	0원 x 0회 x 0인	000	
	조연	0원 x 0회 x 0인	000	
	보조출연	0원 x 0회 x 0인	000	
세트비	세트 디자인 x 0원 x 0회 세트 제작 x 0원 x 0회	000	스튜디오 제공	
미술비	분장, 미용 x 0원 x 0회	000		
촬영	카메라 x 0원 x 0회 지미집 x 0원 x 0회	000		
특수촬영	드론촬영 x 0원 x 0회 수중촬영 x 0원 x 0회	000		
조명	야외조명 x 0원 x 0회	000		
편집	가편실 x 0원 x 0실 x 0회 종편료 x 0원 x 0실 x 0회	000	편집실 제공 (00원 x 00일)	
동시녹음	동시녹음 x 0원 x 회	000		
제작장비	LED 설/해치 x 0원 x 0회	000		

소도구(소품포함)	소품비 x 0원 x 0회	000		제작사 소품 협찬 (가구)
오에스티(OST)	OST 제작 x 0원 x 1식	000		
국내출장비	식비 x 0원 x 0회 x 0인 숙박비 x 0원 x 0박 x 0인	000		
진행비	촬영 진행비 편집 진행비	000		
기타	테이프 x 0원 x 0개 행정 x 0원 x 0회 자문 x 0원 x 0회 번역 x 0원 x 0회	000		
합계	000원	000		

✕ 잘못된 예

- 항목별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제작사 견적서’ 또는 ‘제작사 예산서’로 같음한다는 표기만 한 경우

구분	산출근거	금액 (천원)	방송사 지원 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제작사 견적서 (또는 예산서)		(공란처리)	(공란처리)	
원고료			(공란처리)	(공란처리)	
출 연 료			주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보조출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세트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미술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특수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명			(공란처리)	(공란처리)	
편집			(공란처리)	(공란처리)	
동시녹음			(공란처리)	(공란처리)	
제작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소도구(소품포함)			(공란처리)	(공란처리)	
오에스티(OST)			(공란처리)	(공란처리)	
국내출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진행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기타			(공란처리)	(공란처리)	
합계			(공란처리)	(공란처리)	

핵심조항

제7조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보증) ① 방송사는 본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의 원고료와 실연자의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방송 개시일로부터 본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증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른다.

<방송사-실연자 출연료 지급보증 단체협약 내용>

- 60분물 이상 편성 드라마 :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 40분물 이하 아침 및 일일연속극 : 일금 삼억원정(₩300,000,000)
- 10부작 이하 특집극 및 단막극 : 총 계약금액의 5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②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는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외주제작비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제작사가 실연자에 대한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제작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제작사의 외주제작비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회당 외주제작비를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총 외주제작비 중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는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의 범위 안에서 작가 및 실연자 등이 청구하는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7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지급보증**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으로서 여신행위의 일종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

* **보증보험**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용어사전

* **정지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법률용어사전(현암사)

- 제7조 제2항은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제작사가 실연자의 출연료,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한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방송사가 제작사에 대하여 외주제작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봅시다!

-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원고료 출연료 지급보증 방법

(가)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실연자·스태프·작가 등에게 실제 출연료, 임금, 원고료 등(이하 ‘원고료·출연료 등’이라고 함)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및 계약일 15일 내의 보험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항 1문)

(나) 제작사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하여 원고료,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2항 본문)

(2) 지급보증 범위

- (가)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액(계약 실무)
- (나) 보험액 기준 : 방송사-노동조합 등과의 지급보증 단체협약 내용에 의함(1항 단서)

(3) 방송사의 제작사에 대한 계약대금 지급(3항)

- (가)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액 범위 내에서 지급(3항, 1항 단서, 2항 단서)
- (나) 제작사가 실연자 등에게 원고료·출연료 등을 지급한 경우, 방송사는 기지급이 이루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3항, 2항 본문)
- (다)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체 외주제작비 중 원고료·출연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3항, 2항 본문, 1항 2문)
- (라) (다)의 경우에 방송사-노동조합 등과의 지급보증 단체협약이 존재하면 이를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원고료·출연료 금액 산정에 참조할 수 있음(3항, 2항 본문, 1항 단서)

(4) 실제 원고료·출연료 등 미지급 문제 발생 시 방송사의 대응

- (가) 지급보증보험 가입된 경우 보험금 범위 내에서 방송사가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 가능(4항)
- (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기지급 금액 공제 후 잔여 외주제작비 범위 내에서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가능(4항)
- (다) (가) 또는 (나)의 사유로 직접 지급한 원고료·출연료 등은 미지급 외주제작비를 최대금액으로 하여 상계 가능(4항, 계약실무)

핵심조항

제9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1>과 같이 기여도에 따라 권리 배분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귀속하고 그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 또는 적절한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한다.

유의사항

-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창작자원칙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창작을 한 사람만이 창작자로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제작 기여도’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각각의 기획·개발·제작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작 기여도 산정 시, 재정 기여도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 단,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양도 가능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 기획, 개발, 제작은 다음을 의미한다.

*** 기획**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서 작성 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준비 단계

*** 개발** 기획된 방송프로그램이 실제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적합하고, 제작에서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스

태프 구성 계획을 포함한 기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련의 제작 전 단계의 모든 행위

* **제작**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완성된 영상저작물로 표현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일체의 행위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일컫는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는 「저작권법」(제10조 제1항)을 참조하여 제작기여도는 저작물(방송프로그램)의 창작(기획·개발·제작)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④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

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표준계약서가 동반하는 <별지1> 권리합의서의 경우, 다음의 형태로 작성한다.

- 1) 각 권리 및 사업권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대상 권리배분 비율 각각을 수치로 명기한다. 권리배분 비율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각 권리 및 사업권의 귀속대상(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O 또는 V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예시 3] 참조).
- 2)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합의 사항에 따라 권리 및 사업권 보유 기간, 수익배분 방법 및 배분 비율,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예시3]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 작성

<별지1>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 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 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잘된 예

- 각 권리 및 사업권 배분 비율을 수치로 명기한 경우
- ‘권리 및 사업권 보유기간’, ‘수익배분 방법’, ‘대가 지급’ 등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사항을 수치와 함께 작성한 경우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00%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방송권을 00년 동안 보유한다. • 방송사는 국내 PP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얻은 수익의 00%를 제작사에 배분한다. (후략)
	해외	00%	00%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전송권	국내	00%	00%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해외	00%	00%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공연권	국내	00%	00%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해외	00%	00%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전시권	국내	00%	00%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해외	00%	00%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복제· 배포권	국내	00%	00%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해외	00%	00%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00%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의 중국 지역 방송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판매권 보유기간은 00년이다. • 방송사는 중국 지역 프로그램 판매수입금의 00%를 제작사에 지급한다. (중략) • 방송사는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판매권을 00 동안 보유한다. • 방송사는 방송종료일로부터 0개월(해당월 31일까지) 동안 판매된 웹하드 서비스 판매 수익에 대하여 수수료 공제 후 00%를 제작사에 지급한다.

✕ 잘못된 예

- 권리 및 사업권 배분 비율을 수치로써 명기하지 않고, 귀속대상(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O 또는 V 표시한 경우
- ‘권리 및 사업권 보유기간’, ‘수익배분 방법’, ‘대가 지급’ 등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사항 작성을 누락한 경우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		(공란처리)
	해외	○		(공란처리)
전송권	국내	○		(공란처리)
	해외	○		(공란처리)
공연권	국내	○		(공란처리)
	해외	○		(공란처리)
전시권	국내	○		(공란처리)
	해외	○		(공란처리)
복제· 배포권	국내	○		(공란처리)
	해외	○		(공란처리)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		(공란처리)
	OST음반 제작·판매 등	○		(공란처리)
자료 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		(공란처리)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		(공란처리)
기타 권리 및 사업권		○		(공란처리)

핵심조항

제10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① 방송사와 제작사간 권리·수익 배분의 범위·기간 등은 <별지1>을 사용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를 통해 수정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별지1>에 따라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③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 원본은 방송사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사와 제작사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상호 적극 협조하되 세부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 합의** 1.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런 의견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작성 예시

41쪽 [예시3 - 별지1] 참고

핵심조항

제13조 (방송자료 등의 지원)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게 방송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 <서식 1>의 사항(이하 “방송자료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송자료 등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작사는 방송사의 방송자료 등을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식 1>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서식 1>의 항목별 내용을 작성한다.
- 방송사(원사업자)가 표준계약서 13조 제1항 단서조항을 위반하여 제작사에게 자신의 방송 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강제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법」 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하도급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작성 예시

30쪽 [예시2 - 서식1] 참고

핵심조항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의 제작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계약서에 제작비를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2.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3. 방송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유의사항

-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와 관련한 각 항 및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특히 ‘부당감액 행위’를 정의한 제17조 제2항의 각 호 내용은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귀책사유**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인 요건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방송사(원사업자)가 표준계약서 제17조를 위반하여 제작비 부당 감액 시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 및 벌금 부여가 가능하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도급법」 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하도급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핵심조항

제19조 (책임의 귀속)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8조에 따라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구상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핵심조항

제22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기명·날인**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 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핵심조항

제23조 (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계약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방송사는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때에는 제작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납품 완료된 프로그램을 제작사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유의사항

- 제23조에서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각 호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명기해야 한다.
- 방송사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 취소 시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 및 벌금 부여가 가능하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하도급법」 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하도급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핵심조항

제24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프로그램이 제18조 제1항의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제작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을 담고 있는 제24조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 제24조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서면 통지 후,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7일 또는 그 이상의 '일'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 제24조의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열거된 각 호의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개 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해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지체 없이** 지체(遲滯)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로, '지체 없이'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를 뜻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실제 계약에서 '지체 없이'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황이 발생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함을 의미

II.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제4조 (프로그램 구매 내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구매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 이름 :
2. 프로그램 주요내용:
3. 장르 구분 :
4. 방송 일시 :
5. 제작 편수 : 편당 ()분물 ()편
6. 연출 및 작가 : 연출 (), 작가 ()
7. 주요 출연 :

유의사항

-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보 일체를 계약서에 명기한다 ([예시 1] 참조). 프로그램 구매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분쟁소지를 축소시키고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기본 사항을 명확히 하는 장치로서, 각 요소별 정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4. 방송 일시) 프로그램 편성일자를 ‘년/월/일’ 단위로 작성한다.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방송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방송되는 경우, 방송 ‘시작일’과 ‘종료일’을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병기한다.
- (5. 제작 편수) 편성시간 기준의 편당 길이를 ‘분’ 단위로 명시하고, 전체 제작 편수를 ‘편’, ‘회’, ‘부작’ 등의 단위로 명시한다.
- (6. 연출 및 작가) 연출 및 작가의 성명을 명시한다.
- (7. 주요 출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실연자의 성명을 명시한다.

작성 예시

[예시 1] 제4조 프로그램 구매 내용

1. 프로그램 이름 : 한국의 봄
2. 프로그램 주요내용: 지역별 봄철 풍경 및 풍속, 대표 먹거리 탐방
3. 장르 구분 : 다큐멘터리
4. 방송 일시 : 2019년 5월 1일 수요일 19시 00분~20시 15분
2019년 5월 8일 수요일 19시 00분~20시 15분
5. 제작 편수 : 편당 75분물 2편
6. 연출 및 작가 : 김연출, 이작가
7. 주요 출연 : 박출연

핵심조항

- 제5조 (구매금액의 산정 및 지급)** ①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연기자, 작가, 스태프, 제작시설 등 일체의 제작비는 제작사가 조달하고 관리한다.
- ② 방송사가 동 계약으로 제작사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의 구매 금액은 (총액 원/회당 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 ③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후 제작사의 청구에 의해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방송사의 지급기준에 의거 제작사의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방송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사가 지급해야 하는 원고료, 출연료,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구매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제5조 제2항에서 프로그램의 구매 금액은 총액 및 회당 기준으로 각각 '원' 단위로 명시한다.
- 방송사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프로그램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5조의 제3항 누락 시,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확인하세요!

- 본 조항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달리 지급보증보험 등의 지급절차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1)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면, 방송사는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제작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매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2) 만일,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송사가 제작사를 대신하여 직접 작가 및 실연자에게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이는 채권양도로 볼 수 있고, 제작사에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구매대금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핵심조항

제6조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① 편성시간의 증감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상의 제작 편수는 프로그램의 품질과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유의사항

- 편성시간 증감에 따른 별도 비용에 대해 방송사와 제작사의 협의를 요구되며, 제6조의 제1항 명기를 통해 해당 절차를 규정한다.
- 제6조 제2항에서 방송사 편성사정에 따른 제작편수의 증감은 '방송사의 제작사 간 사전협의', '회당 제작비의 증감'을 전제한다. 두 가지 조건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핵심조항

제8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기여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권리의 처리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제8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호 협조할 사항을 정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양자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이다.

* **저작권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핵심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제작사가 제12조 제2항의 수정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을 담고 있는 제15조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열거된 각 호의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개 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 해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 지체 없이** 지체(遲滯)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로, ‘지체 없이’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를 뜻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실제 계약에서 ‘지체 없이’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황이 발생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함을 의미

핵심조항

제17조 (책임의 귀속 및 제작 책임)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 (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3조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유의사항

* **귀책사유**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인 요건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구상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빛을 갠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확인하세요!

- 제17조 제2항에서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제작사가 책임져야 하는 사유로 발생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방송사가 납부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해당 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민법」의 해석상 인정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III.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핵심조항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분물,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ENG(), 6mm()	
	방송일시		
계약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월급	회차 임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월 일
	<input type="checkbox"/> 주급	회차 임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요일
	<input type="checkbox"/>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 금 주 : 계좌번호 :	

유의사항

-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주요내용 일체를 명기한다([예시 1] 참조). 필요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2조에서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명’, ‘형식’, ‘방송일시’를 포함한다.
 - 1) ‘프로그램명’ 란에는 프로그램 제목을 기재하고, ‘편당길이’는 ‘분’ 단위로, ‘제작편수’는 ‘부작’ 단위로 작성한다.
 - 2) ‘프로그램 형식’에는 프로그램 장르, 제작 방식 등을 명기한다.
 - 3) 방송일시는 편성되는 일자 및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제2조에서 “계약업무”는 ‘계약일’, ‘업무완료시기’, 프로그램 제작 관련 담당 ‘업무’를 포함한다.
 - 1) ‘계약일’과 ‘업무완료시기’는 각각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작성한다.
 - 2) ‘업무’란에는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병기한다.
- 제2조에서 “임금지급”은 크게 ‘지급형태’(월급/주급/일급)에 따른 금액 및 지급시기, 지급방식을 포함한다.
 - 1) 월급/주급/시급 중 적절한 지급형태를 결정하고, 금액과 지급시기를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 2) 임금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며 산정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 일급의 경우, 예상되는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 3) 월급은 회차별 지급 금액과 총액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지급일자(매월○일)를 특정 한다.
-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 예시

[예시1] 계약 주요내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오늘도 사랑), (65)분물, (16)부작	
	형식	미니시리즈 16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O), ENG(O), 6mm()	
	방송일시	2019년 7월 1일 ~ 2019년 8월 20일 매주 월화 22:00~23:05	
계약업무	계약일	2019년 5월 1일	
	업무 완료시기	2019년 8월 16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 촬영(카메라) 보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메라장비 관리 2. 촬영장비 운반 및 설·해치 3. 촬영감독 보조 4. 촬영현장 진행 업무 • 소정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기준 0시간 (휴게시간 0시간)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급	0회차 임금 000원 (기준시급 000원) 총 금액 000 원 ※ 임금 산정 기준 작성	매월 00일
	<input type="checkbox"/> 주급	회차 임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0요일
	<input type="checkbox"/>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최고은행 예 금 주 : 홍길동 계좌번호 : 111-11-2222	

핵심조항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유의사항

- 제3조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구분하여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작성한다. 계약기간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지정해야 한다.
- 제3조와 관련하여 '계약연장 또는 갱신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통지를 전제 한다'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확인하세요!

- 계약종료시점을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야 하며, '촬영종료 시', '프로그램 폐지 시', '개편 시' 등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 표준계약서 제14조에 따라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 상호합의 및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내용의 연장 및 변경이 가능하다.
- 표준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취소, 계약만료일 이전 계약종료가 가능하다.

작성 예시

✓ 잘된 예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잘못된 예

-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촬영종료 시까지로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프로그램 폐지 시까지로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편 시까지로 한다.

✗ 잘못된 예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본조 제1항의 계약기간 중 개편, 편성변경, 프로그램 폐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

핵심조항

제4조 (4대 보험 가입)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에 각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자신의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4대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을 의미

- 각 보험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 스태프 본인 각각의 법령상 정해진 보험료 부담률을 명시할 수 있다.

핵심조항

제5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스태프’의 성별, 종교, 성적체성, 장애, 연령, 조합원여부, 단기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⑧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계약서는 제5조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8개 항을 포괄해야 한다. 열거된 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5조의 ⑤에 명시된 ‘추가 작업’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 신속한 협의, 발생하는 제비용 지급,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능하다.

*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관계법령

(제5조의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 ③)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5조의 ⑧)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초과한 추가 작업 가능성만 명시한 채, ‘협의’와 ‘발생되는 제비용 지급’, 두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준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조항

- 제6조(‘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③ ‘스태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 ⑥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⑦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계약서는 제6조의 스태프의 의무 7개 항을 포괄해야 한다. 열거된 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저작권**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 **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 *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말하며 여기에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권리도 포함됨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핵심조항

제7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동 표준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 요건이나 법령상 정해진 사유가 아닌, 별도 사유로 계약 내용을 임의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취소로 볼 수 있다.



참고

동 표준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스태프'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핵심조항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정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유의사항

- 제8조 제2항의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각 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핵심조항

제9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 단, 사업자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과 1일의 근로시간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스태프'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의 간격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스태프'에게 정기 주휴일 및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제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시간 및 휴가를 산정해야 한다.

- * 합의 1.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런 의견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확인하세요!

- 일부 항이 누락되거나, 근거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과 상이하게 작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로 되고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한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된다.
-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 상호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근거한다.
 ※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동계약서의 제10조 제4항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근거한다.



알아봅시다!

- 시점별·근로자 규모별 주당 최대 근로시간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및 제작업, 광고업 등의 경우)

구분	'19.7.1.~'19.12.31.	'20.1.1.~'21.6.30.	'21.7.1.~
300인 이상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50~299인	68시간 (40+연장12+휴일16)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5~49인	68시간 (40+연장12+휴일16)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68시간 (40+연장12+휴일16)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조항

제10조 (임금의 결정 지급)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급여를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통상 지급되는 임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월 기본급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월 기본급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스태프'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급여를 정한다.
3.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되, 그 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방송사의 경우)이나, 납품한 '프로그램'(외주제작사의 경우)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급여 산정에 대해 월별 약정한 회차 또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임금(시급×초과근로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월별 회차(또는 근로일수)가 약정한 회차(또는 근로일수)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2조에서 정한 임금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서식1>에 따라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유의사항

- 스태프의 임금은 표준계약서 제10조에 근거하여 결정 및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제10조 6개 항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야 한다. 일부 항 및 호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알아봅시다!

- 통상임금은 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법원에 의하면 명절 등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직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스태프’의 경우, 동 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의 경우 209시간, 주의 경우 40시간, 일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초과수당을 계산한다.

핵심조항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제11조 내용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작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중 원고료, 출연료 등 지급보증 조항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이와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을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체결하는 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 제4항

“방송사는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의 범위 안에서 작가 및 실연자 등이 청구하는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핵심조항

제14조 (계약의 연장 및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내용의 연장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용직이거나 주 단위 고용형태의 ‘스태프’의 경우에는 구술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하에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금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기명·날인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 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핵심조항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반영)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스태프’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할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을 담고 있는 제17조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제17조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열거된 각 호의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개 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서면 통지 후,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일’ 단위로 특정해야 하며, 이의제기 가능 기간은 제1항에서 제시한 7일 또는 그 이상으로 지정한다.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해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핵심조항

제18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역무의 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역무의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유의사항

- 손해배상과 관련한 제18조 각 항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한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

동 표준계약서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정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확인하세요!

- 이 조항을 활용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IV.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핵심조항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분물,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ENG(), 6mm()
	방송일시	
계약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탁보수지급	하도급 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조건	
기타		‘회사’는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주요내용 일체를 명기한다([예시 1] 참조). 필요 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2조에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 ‘형식’, ‘방송일시’ 정보를 포함한다.
 - 1) ‘프로그램명’란에는 프로그램 제목과 함께 편당길이 및 제작편수를 작성한다. 편당길이는 ‘분’ 단위로, ‘제작편수’는 ‘부작’ 단위로 특정하여 명기한다.
 - 2) ‘프로그램 형식’에는 프로그램 장르, 제작 방식 등을 명기한다.
 - 3) 방송일시는 편성되는 일자 및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제2조에서 “계약업무”는 ‘위탁일’, ‘업무완료시기’, 프로그램 제작 관련 담당 ‘업무’를 포함한다.
 - 1) ‘위탁일’과 ‘업무완료시기’는 각각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명시한다.
 - 2) ‘업무’란에는 위탁 업무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제2조에서 “위탁보수지급”은 크게 ‘하도급 대금’과 ‘지급시기 및 방식’을 포함한다.
 - 1) ‘하도급 대금’은 ‘총액’과 ‘회당 금액’으로 구분하여 ‘원’ 단위로 기재한다.
 - 2) ‘지급시기 및 방식’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 지급기준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 간 협의 내용에 따라 지정하되,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 정기적 지급시기를 특정하여 명시한다.
 - 3)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지급근거 마련을 위하여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관련 정보는 제2조 “위탁보수지급” 내 ‘지급시기 및 방식’란에 명기한다.

작성 예시

[예시1] 계약 주요내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오늘도 사랑), (65)분물, (2)부작
	형식	미니시리즈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O), ENG(O), 6mm()
	방송일시	2019년 5월 1일 수요일 19시 00분 ~ 20시 15분 2019년 5월 8일 수요일 19시 00분 ~ 20시 15분
계약업무	위탁일	2019년 4월 1일
	업무 완료시기	2019년 4월 10일
	업무	특수영상(VFX) 효과 1. 키프레임/매트컨셉아트 2. 캐릭터/환경/프랍/이펙트 디자인
위탁보수지급	하도급 대금	총액 000원 / 회당 000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행: 최고은행 예금주: (주)홍길동크리에이티브 계좌번호: 111-11-2222
	세부 조건	
기타		‘회사’는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핵심조항

- 제4조(‘스태프’ 임금 지급 보증)**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증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하도급 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회사’가 ‘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의 하도급 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하도급 대금 중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의 범위 안에서 ‘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 **지급보증**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으로서 여신행위의 일종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
- * **보증보험**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용어사전
- * **정지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법률용어사전(현암사)
- *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제4조 제2항은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봅시다!

-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 스태프 임금 지급보증 방법
 - (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스태프 임금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및 계약일 15일 내의 보험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항 1문)
 - (나) '회사'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하여 스태프에게 실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2항 본문)

2) 지급보증 범위

- (가)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액(계약 실무)
- (나) 보험액 기준 :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내용 또는 상호 협의에 의함(1항 단서)

3) '회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3항)

- (가)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액 범위 내에서 지급(3항, 1항 단서, 2항 단서)
- (나) 실제 스태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기지급이 이루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3항, 2항 본문)
- (다)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체 하도급대금 중 스태프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3항, 2항 본문, 1항 2문)
- (라) (다)의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상호 협의 내용이 존재하면 이를 하도급대금 중 공제대상이 되는 스태프 임금 금액 산정에 참조할 수 있음(3항, 2항 본문, 1항 단서)

4) 실제 스태프 임금 미지급 문제 발생 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대응

- (가) 지급보증보험 가입된 경우 보험금 범위 내에서 스태프 임금 직접 지급 가능(4항)
- (나) 지급보증보험 미가입되었으나 스태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기지급 금액 공제 후 잔여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스태프 임금 지급 가능(4항)
- (다) (가) 또는 (나)의 사유로 직접 지급한 스태프 임금은 잔여 하도급대금 대응액 범위 내에서 상계 가능(4항, 계약실무)

핵심조항

제5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계약의 변경은 회사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절차와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 포함, 전자서면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두 조건을 전제한다. 계약 변경 관련 계약서 내용 작성 시, 상기 조건을 모두 명기해야 한다.

* 합의

1.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런 의견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기명·날인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 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핵심조항

제6조(하도급 대금) ① 하도급 대금은 수급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회사'는 상대방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적정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제6조 각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제6조의 제1항에서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책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하도급 대금을 산정한다.

- 제6조 제3항에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을 ‘대금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특정하여 명기한다.
- 제6조 제4항 1호의 선급금은 ‘원’ 단위로 기재하고, 2호의 지급시기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명기한다.

핵심조항

제7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업무지원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회사’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합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본 계약이 계속적 거래 계약일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협의 없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유의사항

- 제7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한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핵심조항

제9조(‘회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및 지시)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수급내용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④ 야외에서 대규모 인원이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유의사항

- 제9조의 ‘회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및 지시’ 관련 5개 항을 포괄하여 작성한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조항

제11조(안전배려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회사’에 속한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계약서는 제11조 ‘안전배려의 의무’ 관련 3개 항을 포괄하여 작성한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조항

제12조(업무수행 및 검사)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와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때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 항에 따른 문제의 개선,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위임한 상급자의 판단에 따른다.

유의사항

- 제12조 제2항에서 완성물 인도 및 역무제공 완료 시기는 ‘년/월/일’로 특정하여 해당 항에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기는 제2조의 ‘업무완료시기’ 이후로 특정할 수 없다.
- 제12조 제4항에서 계약기간은 제2조에서 지정한 ‘위탁일’부터 ‘업무완료시기’까지를 의미한다.

핵심조항

제14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동 표준계약서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 요건이 아닌, 별도 사유로 계약 내용을 임의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취소로 볼 수 있다.



참고

동 표준계약서 제22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 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품 및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8. '회사'의 인원·장비 및 수급내용 완성물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회사'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핵심조항

제15조(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행위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유의사항

- 제15조 제2항의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각 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핵심조항

제16조(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① ‘회사’는 업무를 위탁 받은 후 최저임금 또는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공급원가(최저임금을 포함한다)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공급원가의 증가분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최저임금·공급원가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한다.

유의사항

- 제16조 제2항에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상호 협의의 기간을 ‘대금 조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특정하여 명기한다.
- 제16조 제3항에서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을 ‘대금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특정하여 명기한다.

핵심조항

제17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회사’와 하도급 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유의사항

- 제17조 제2항의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각 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조항

제18조(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1. ‘회사’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의 수급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핵심조항

제20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① ‘회사’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 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하여 ‘회사’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유의사항

*** 저작권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 저작권재산권의 양도와 별개로 저작인격권*은 양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료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핵심조항

제22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 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품 및 의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8. ‘회사’의 인원·장비 및 수급내용 완성물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회사’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을 담고 있는 제22조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제22조에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열거된 각 호의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9개 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22조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서면 통지 후,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일’ 단위로 특정해야 하며, 이의제기 가능 기간은 제1항에서 제시한 7일 또는 그 이상으로 지정한다.

-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 **해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 **지체 없이** 지체(遲滯)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로, ‘지체 없이’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를 뜻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실제 계약에서 ‘지체 없이’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황이 발생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함을 의미

핵심조항

제23조(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품 및 의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8. ‘회사’의 인원·장비 및 수급내용 완성물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회사’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손해배상과 관련한 제23조 각 항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한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V.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핵심조항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분물,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ENG(), 6mm()
	방송일시	
계약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계약대금지급	계약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조건	
기타		'스태프'는 제3자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근로(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주요내용 일체를 명기한다([예시 1] 참조). 필요 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2조에서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명’, ‘형식’, ‘방송일시’를 포함한다.
 - 1) ‘프로그램명’ 란에는 프로그램 제목을 기재하고, ‘편당길이’는 ‘분’ 단위로, ‘제작편수’는 ‘부작’ 단위로 작성한다.
 - 2) ‘프로그램 형식’에는 프로그램 장르, 제작 방식 등을 명기한다.
 - 3) 방송일시는 편성되는 일자 및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제2조에서 “계약업무”는 ‘위탁일’, ‘업무완료시기’, 프로그램 제작 관련 담당 ‘업무’를 포함한다.
 - 1) ‘위탁일’과 ‘업무완료시기’는 각각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명시한다.
 - 2) ‘업무’란에는 위탁 업무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제2조에서 “계약대금지급”은 크게 ‘계약 대금’과 ‘지급시기 및 방식’을 포함한다.
 - 1) ‘계약대금’은 ‘총액’과 ‘회당 금액’으로 구분하여 ‘원’ 단위로 기재한다.
 - 2) ‘지급시기 및 방식’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 지급기준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 협의 내용에 따라 지정하되,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 정기적 지급시기를 특정하여 명시한다.
 - 3) 원활한 계약 대금지급 및 지급근거 마련을 위하여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관련 정보는 제2조 “계약대금지급” 내 ‘지급시기 및 방식’란에 명기한다.



확인하세요!

- 제2조 ‘기타’에서 업무위탁을 받은 ‘스태프’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업무 성격이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업무 성격이 하도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근로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예시1] 계약 주요내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오늘도 사랑), (65)분물, (2)부작
	형식	미니시리즈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O), ENG(O), 6mm()
	방송일시	2019년 5월 1일 수요일 19시 00분 ~ 20시 15분 2019년 5월 8일 수요일 19시 00분 ~ 20시 15분
계약업무	위탁일	2019년 4월 1일
	업무 완료시기	2019년 5월 1일
	업무	촬영장소 섭외 1. 대본 검토 후 촬영장소 구상 2. 연출진 포함 스태프와 촬영장소 협의 3. 촬영장소 이용 위한 제반 업무 처리(관공서·소유자 허가, 계약 등)
계약대금지급	계약대금	총액 000원/ 회당 000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행: 최고은행 예금주: (주)홍길동크리에이티브 계좌번호: 111-11-2222
	세부 조건	
기타		‘회사’는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핵심조항

제3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태프'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제3조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7개 항을 포괄하여 작성한다. 열거된 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준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3조의 제3항에 명시된 '추가 작업'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간 신속한 협의, 발생하는 제비용 및 손해 배상을 전제한다.

*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초과한 추가 작업 가능성만 명시한 채, 상기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조항

- 제4조(‘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③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⑤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제4조의 스태프의 의무 5개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열거된 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근로표준계약서’ 제6조의 내용을 참조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저작권**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말하며 여기에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권리도 포함됨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핵심조항

제5조(임금 지급 보증)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제작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스태프’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작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증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계약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계약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스태프’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스태프’가 고용된 제작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스태프’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스태프’의 계약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계약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계약대금 중 정지조건부 계약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고용된 제작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계약대금의 범위 안에서 제작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스태프가 고용한 다른 제작스태프 임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 5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 **지급보증**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으로서 여신행위의 일종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
- * **보증보험**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용어사전
- * **정지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법률용어사전(현암사)

• 제5조 제2항은 '스태프'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스태프'가 고용한 제작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스태프'에 대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봅시다!

-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 제3자 임금 지급보증 방법
 - (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스태프가 고용한 다른 제작스태프(이하 '제3자'라고 한다)의 임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및 계약일 15일 내의 보험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항 1문).
 - (나) 스태프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실제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2항 본문)
 - 2) 지급보증 범위
 - (가)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액(계약 실무)

(나) 보험액 기준 :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내용 또는 상호 협의에 의함(1항 단서)

3) 스태프에 대한 계약대금 지급(3항)

(가)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액 범위 내에서 지급(3항, 1항 단서, 2항 단서)

(나) 실제 제3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기지급이 이루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3항, 2항 본문)

(다)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체 계약대금 중 제3자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3항, 2항 본문, 1항 2문)

(라) (다)의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상호 협의 내용이 존재하면 이를 계약대금 중 공제대상이 되는 제3자 임금 금액 산정에 참조할 수 있음(3항, 2항 본문, 1항 단서)

4) 실제 스태프(제3자) 임금 미지급 문제 발생 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대응

(가) 지급보증보험 가입된 경우 보험금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4항)

(나) 지급보증보험 미가입되었으나 일부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기지급 금액 공제 후 잔여 계약대금 범위 내에서 제3자 임금 지급 가능(4항)

(다) (가) 또는 (나)의 사유로 직접 지급한 임금은 미지급 계약대금과 대응액 범위 내에서 상계 가능(4항, 계약실무)

핵심조항

제6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태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계약의 변경은 스태프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절차와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 포함, 전자서면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두 조건을 전제한다. 계약 변경 관련 계약서 내용 작성 시, 상기 조건을 모두 명기해야 한다.

* 합의

1.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런 의견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기명·날인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 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핵심조항

제8조(계약대금) ① 계약대금은 위탁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협의하여 정하되, 위탁업무량에 따라 일일업무량 등 업무강도를 반영하여 계약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거나, 재료비, 인건비 및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스태프'는 상대방에게 계약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스태프'의 청구가 있으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스태프'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선급금을 제작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계약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스태프'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적정한 계약대금 결정 및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제8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제8조의 제1항에서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책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계약대금을 산정한다
- 제8조 제3항에서 계약대금 조정 협의 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을 '계약대금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특정하여 명기한다.
-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8조 제4항의 1호의 선급금은 '원' 단위로 기재하고, 2호의 지급시기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명기한다.

핵심조항

제11조(안전배려의 의무)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고용인에 대한 재해관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계약서는 제11조 '안전배려의 의무' 관련 3개 항을 포괄해야 한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조항

제12조(업무수행 및 검사)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스태프’와 협의한다.

②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과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수행하는 업무가 프로그램 제작방향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스태프’에게 설명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스태프’의 업무 수행 정도 및 내용을 검사하고 업무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제작 기준이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완성물의 수정요구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스태프’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스태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한 자의 판단에 따른다.

유의사항

- 제12조 제2항에서 완성물 인도 및 역무제공 완료 시기는 ‘년/월/일’로 특정하여 해당 항에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기는 제2조의 ‘업무완료시기’ 이후로 특정할 수 없다.
- 제12조 제4항에서 계약기간은 제2조에서 지정한 ‘위탁일’부터 ‘업무완료시기’까지를 의미한다.

핵심조항

제14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동 표준계약서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 요건이 아닌, 별도 사유로 계약 내용을 임의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취소로 볼 수 있다.



참고

동 표준계약서 제21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인원·장비 및 수탁내용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스태프'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핵심조항

제15조(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 행위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유의사항

- 제15조 제2항의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각 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핵심조항

제16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계약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스태프’와 계약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계약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스태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계약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스태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유의사항

- 제16조 제2항의 ‘계약대금의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각 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조항

제17조(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스태프'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1. '스태프'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업무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스태프'와 협의하고 '스태프'에게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핵심조항

제19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① ‘스태프’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하여 ‘스태프’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유의사항

*** 저작권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 저작권재산권의 양도와 별개로 저작인격권*은 양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료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핵심조항

제21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인원·장비 및 수탁내용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스태프’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을 담고 있는 제21조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제21조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열거된 각 호의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9개 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21조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서면 통지 후,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일’ 단위로 특정해야 하며, 이의제기 가능 기간은 제1항에서 제시한 7일 또는 그 이상으로 지정한다.

-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 **해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 **지체 없이** 지체(遲滯)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로, ‘지체 없이’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를 뜻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실제 계약에서 ‘지체 없이’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황이 발생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함을 의미

핵심조항

제22조(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완료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업무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업무 완성물의 멸실·훼손
4. 제12조제1항의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6. '스태프'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업무 완료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손해배상과 관련한 제22조 각 항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한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VI.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제3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작내용	프로그램 명		
	방송 일시/시간/회수		
	제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제작 길이·편수	회당 분물 회	
원고 인도 기일		촬영일로부터 일 이전	
① 원고료 (지급 시기별)	구 분	금 액	지급 시기
	계약금	원	계약체결 후 일 이내
	1차 중도금	원(원고 회분)	방송개시 후 일 이내
	2차 중도금	원(원고 회분)	
	잔 금	원(원고 회분)	방송종료 후 일 이전
	합 계		
② 원고료 (내역별)	구 분	금 액	지급 시기
	기획료	원	
	구성료	원	
	집필료	원	
	자료비	원	
	기 타	원	
	합 계		
전속 여부			
기타 사항			

- * 1. 원고료는 ① 지급시기별, ② 내역별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하다.
 2. 상기 사항은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3. 저작권의 2차적 사용에 관하여서는 별도 협의하되, 단체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별도협약 내용으로 대체 가능하다.

유의사항

- 제3조의 계약 주요내용 일체를 명기한다([예시 1] 참조). 필요 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계약의 주요내용은 ‘제작내용’, ‘원고 인도 기일’, ‘원고료(지급시기별 또는 내역별)’ 등을 포함한다.

1) ‘제작내용’에서 ‘제작 길이’는 회당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분’(물) 단위로 명기하고, ‘제작 편수’는 원고 집필을 담당하는 편수를 정하여 ‘회’ 단위로 작성한다.

2) ‘지급시기별 원고료’는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지급시기별 원고료와 ‘합계’ 금액 각각을 ‘원’ 단위로 명기한다. 또한 계약체결·방송개시·방송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시기를 병기한다.

※ 주로 드라마 집필 계약 시 ‘시기별 원고료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형태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3) ‘내역별 원고료’는 ‘기획료’, ‘구성료’, ‘집필료’, ‘자료비’, ‘기타’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내역별 원고료와 ‘합계’ 금액 각각을 ‘원’ 단위로 명기한다. 프로그램의 기획, 포맷 개발시에 기획료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획료’ 부문에 해당 내역을 작성한다. 또한 책정된 내역별 원고료의 지급 시기를 병기한다.

※ 주로 구성, 다큐, 라디오, 번역 장르의 프로그램 기획 계약 및 집필 계약 시 ‘내역별 원고료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형태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4) ‘전속 여부’에는 계약 당사자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간 전속 계약 체결 여부를 표기하고 전속계약금 여부를 명기한다. 전속계약 시 표준계약서 제7조 제2항을 참조한다.

- ‘기타사항’에는 동 표준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사항 등을 작성한다.

*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확인하세요!

- 제3조의* 각주 3과 관련하여 방송작가협회 회원의 경우 재방송, 복제·배포, 전송 등 프로그램의 2차이용에 따른 저작권은 협회와 방송사간 단체협약에 따르므로 집필계약 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없으며, 협약내용으로 대체 가능하다(157쪽, 동 표준계약서 제16조 준용 시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 참조).

* 저작권의 2차적 사용에 관하여서는 별도 합의하되, 단체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별도 협약내용으로 대체 가능하다.

작성예시

[예시 1] 계약 주요내용

제작내용	프로그램 명	히스토리	
	방송 일시/시간/회수	· 2019년 5월 5일 일요일 ~ 2019년 6월 9일 일요일 (매주 일요일) · 22시 00분 ~ 23분 10분 · 6부작	
	제작 형식	일요연속극 6회 예정	
	제작 길이·편수	회당 70분물 6회	
원고 인도 기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전	
① 원고료 (지급 시기별)	구 분	금 액	지급 시기
	계약금	000원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1차 중도금	000원(원고 2회분)	방송개시 후 15일 이내
	2차 중도금	원(원고 회분)	
	잔 금	000원(원고 4회분)	방송종료 후 15일 이전
	합 계	000원	
② 원고료 (내역별)	구 분	금 액	지급 시기
	기획료	원	
	구성료	원	
	집필료	원	
	자료비	원	
	기 타	원	
합 계			
전속 여부		※ 전속계약일 경우, 해당 내용 표기 (전속계약금 여부 병기)	
기타 사항		※ 인센티브 조건이 있을 경우 본 칸에 내용을 명기 (동 계약서 제12조 2항 참조)	

핵심조항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본 계약 제3조에서 약정한 집필 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계약기간은 개편, 편성변경, 원고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제4조 계약기간은 계약의 '개시일'과 '종료일'로 구분하여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명기한다. 계약기간이 '년/월/일' 단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계약기간의 변경은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간 상호 합의를 전제한다. 계약기간 변경의 조건으로서 상호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제4조의 제1항, 제2항 형태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제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작가를 교체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작가와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 * **합의**
1.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런 의견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작성 예시

✓ 잘된 예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본 계약 제3조에서 약정한 집필 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계약기간은 개편, 편성변경, 원고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잘못된 예

-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촬영종료 시까지로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프로그램 폐지 시까지로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편 시까지로 한다.



확인하세요!

- 계약종료시점을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고 '촬영종료 시', '프로그램 폐지 시', '개편 시' 등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잘못된 예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본 계약 제3조에서 약정한 집필 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계약기간 중 개편, 편성변경, 원고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



확인하세요!

- 표준계약서 제20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 서면 상호합의를 전제한다. 계약내용의 변경 역시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 상호합의 및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두 조건에 대한 명기 없이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작성된 경우, 표준계약서를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취소, 계약만료일 이전 계약종료 등은 본 표준계약서 제20조 제1항에서 지정한 각 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가능하다.

핵심조항

제5조(계약의 변경)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계약의 변경은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절차와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 포함, 전자서면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두 조건을 전제한다. 계약 변경 관련 계약서 내용 작성 시, 상기 조건을 모두 명기해야 한다.

* 기명·날인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 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핵심조항

제6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작가’의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방송을 완료하지 못하여 작가가 제3조에서 약정한 집필횟수를 초과하여 추가 집필·구성 등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작가’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 창작활동에 따라 발생한 원고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작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집필·구성·기획 등 주요 창작활동 범위 이외의 제작에 필요한 참여 요구 시 ‘작가’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제6조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5개 항을 포괄하여 작성한다. 열거된 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준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추가 집필·구성 등 창작활동은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간 ‘신속한 협의 절차’와 ‘발생한 원고료 추가지급’을 전제한다.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초과한 추가 작업 가능성만 명시한 채, 상기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6조 제5항에서 작가의 집필·구성·기획 등 주요 창작활동 범위는 제3조 계약내용으로 제한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편집, 섭외, 협찬품 관리 등 창작활동 이외의 일을 작가에게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작가의 직무 범위를 사전협의하여 정하고, 해당 내용을 가급적 계약서에 명시한다.

핵심조항

제7조(작가의 의무) ① ‘작가’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집필·구성 등 창작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조에서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가’는 본 계약 제4조에 의한 계약 기간 중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과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작가’는 자신의 집필원고, 구성안 등 창작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④ ‘작가’는 방송 관련 정부기관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심의규정 및 제작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작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제7조의 작가의 의무 5개 항을 포괄하여 작성한다. 열거된 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준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7조 제2항은 작가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와 집필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의 타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과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며 해당 내용을 제7조 제2항과 같이 명기한다.

- * **저작권**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 **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 *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말하며 여기에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권리도 포함됨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핵심조항

제10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동 표준계약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 요건이 아닌, 별도 사유로 계약 내용을 임의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취소로 볼 수 있다.



참고

동 표준계약서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

으나 상대방이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가'가 원고를 인도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인수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거나, 제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하도록 작가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상대방의 명예 또는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서면으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작가'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핵심조항

제11조(부당한 원고 인도 거부 등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거나 인도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한 원고 인도 거부 등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한 제11조를 계약서 본문에 포함시킨다.
- 계약당사자인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상호 협의를 통해 '부당한 원고 인도 거부 등의 행위'를 정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핵심조항

제12조(원고료) ① 원고료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원고'의 집필·구성·기획 등 창작활동의 제공 및 해당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와 상호 협의 하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제3조의 원고료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그 소속단체와 작가의 소속단체 간 별도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5조에 의해 계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에 따라 원고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1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완성분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해야 할 원고료 중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원고료 및 인센티브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제12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참고

동 표준계약서 제14조(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제3조에 따른 인도기일에 원고를 인도하여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인도 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도된 원고가 계약상의 제작 의도 및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작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협의에 의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에 의한 '작가'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된 원고가 프로그램 제작에 객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원고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확인하세요!

- 제12조 제4항은 계약변경에 따른 원고료 관계 명확화 및 완성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조항

제13조(원고료 지급보증) ① ‘제작사’와 방송사가 외주제작계약 체결 시 원고료 등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가’는 원고료 미지급 문제 발생 시 ‘제작사’와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에게 원고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해당 금액을 ‘작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의 경우에 ‘제작사’는 원고료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2일) 내에 ‘제작사’와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제13조의 제1항은 작가 원고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장치로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확인하세요!

- 본 조항은 외주제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작가의 원고료 미지급에 대한 것으로 프로그램 제작계약서 제7조의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취급된다. 다만, 이 조항은 ‘지급보증*보험’ 제출이 전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작가 보호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계약서 제7조를 참조하여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 **지급보증**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으로서 여신행위의 일종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



알아봅시다!

-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1) 제작사의 원고료 미지급문제 발생 경우(1항)
 - (가)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작가는 방송사에 미지급 원고료 지급 요청 가능(1항 본문)
 - (나) 이 경우, 방송사는 작가에게 원고료 직접 지급이 가능(1항 단서)
 - (2) 원고료 증빙 자료 제출 요청(2항)
 - (가) 방송사의 작가에 대한 원고료 직접지급 요청이 있으면 방송사는 제작사에 원고료 지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단).
 - (나) 이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면 2일 내에 제작사는 방송사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후단).
- ※ 본 조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압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방송사는 ① 작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② 원고료를 포함한 미지급 외주제작비 전체에 대한 지급보류 중에서 택할 수 있다.

핵심조항

제15조(저작권)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집필되는 원고, 기획안 등 창작물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창작 또는 제작기여도, 신탁단체와의 협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의사항

- 제15조(저작권)와 관련하여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반드시 상호 협의를 거쳐 기획안, 원고 등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권리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 ※ 「저작권법」 상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감정, 아이디어가 아닌 그것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 관계 및 귀속대상을 설정한다.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일컫는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는 「저작권법」(제10조 제1항)을 참조하여 제작기여도는 저작물(방송프로그램)의 창작(기획·개발·제작)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작 기여도 산정 시, 재정 기여도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창작자원칙에 따라 직접적으로 창작을 한 사람만이 창작자로 저작권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핵심조항

제16조(프로그램의 2차 이용)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방송한 후에 2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별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가’ 또는 작가의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2차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작가가 사용내역 명세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지급 시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 프로그램 2차적 사용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제16조 각 항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계약 당사자 작가가 자신의 권리를 특정 협단체에 위탁한 경우, 제16조의 제1항은 방송사와 해당 협단체가 체결한 별도 계약 내용에 따라 대체 작성할 수 있다([예시2] 참조).

작성 예시

[예시2] 프로그램 2차 이용 관련 ‘방송사’와 ‘한국방송작가협회’ 체결 계약내용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방송한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2차 이용할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가 방송작가협회와 체결한 별도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계약한 방송사업자의 채널에서 본방송 이후 재방송하는 경우
2. 다른 방송사업자(지역관계사, 민방사 포함)에게 방송용으로 판매, 공급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판매용으로 복제, 배포 하는 경우

4. 국내외에서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5. '작가'의 원고를 2차적저작물작성(리메이크, 출판 등) 등 본항 1~4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송작가협회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사전에 합의하여 사용기준을 정한다.

핵심조항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가'가 원고를 인도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인수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거나, 제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하도록 작가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상대방의 명예 또는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서면으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작가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을 담고 있는 제20조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각 항 및 각 호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20조 제1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이행 최고 후, 계약이행 기간을 '일' 단위로 특정해야 하며, 계약이행 기간은 제1항에서 제시한 14일 이내로 지정한다.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해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최고 (催告)**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핵심조항

제21조(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1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작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작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가의 행위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법률비용 포함)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손해배상과 관련한 제21조 각 항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한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확인하세요!

- 특히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작가’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내용을 명시한 제21조 제3항을 계약서 내용에 명시한다.



참고

동 계약서 제11조(부당한 원고 인도 거부 등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거나 인도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계약서 제7조('작가'의 의무) ③ '작가'는 자신의 집필원고, 구성안 등 창작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분쟁해결이
필요하다면?**

유형	문의처
<p>사업자 간 분쟁이 있을 시? (예. 방송사-제작사, 방송사-방송사, 제작사-제작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drc.kr / Tel. 1588-2594 • 콘텐츠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 Tel. 1566-1114 / Fax 02-2016-4150
<p>예술인(스태프, 작 가)으로서 권리 관련 분쟁이 있을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신문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 Tel. 02-3668-0220
<p>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을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 Tel. 1800-5455
<p>노동관련 분쟁이 있을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노동위원회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인천/강원/ 충북/전북/제주/울산)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 Tel. 044-202-8226 *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누리집 접속 가능 • 지방고용노동청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Tel. (국번없이) 1350 * 🏠 >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에서 6개 지 방고용노동청 누리집 접속 가능
<p>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시스템 https://fair.ftc.go.kr/home.do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 www.kofair.or.kr / Tel. 1588-1490



**법 관련
세부내용이
궁금하다면?**

관련법률	참고
「저작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 참고자료(예): 「콕콕 저작권: 권리자 편」(2016),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2012) - 자료 이용경로: 🏠 > 자료 > 조사연구, 기타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 참고자료(예): 알기 쉬운 생활법령, 주요법령, 100문 100답 - 자료 이용경로: 🏠 > 생활법령 > 저작권보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참고자료(예):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 자료 이용경로: 🏠 > 정책/제도 > 기업거래 정책> 하도급거래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참고자료(예):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 자료 이용경로: 🏠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예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 참고자료(예): ‘예술인 복지법이란?’, ‘예술활동증명’ - 자료 이용경로: 🏠 > 사업안내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복지법이란?

• 상기 법 외에도 「콘텐츠산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민법」 등 참고 필요

• 모든 법의 본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표준계약서
전문을
내려받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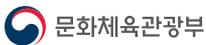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drc.kr>

🏠 > 정보마당 > 서식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 > 지원 > 표준계약서 보급 > 방송 분야



www.mcst.go.kr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2, 3239



www.kocca.kr

공정상생지원단 02-2016-4155

방송산업팀 061-900-6332

산업정책팀 061-900-6558

부록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외주제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외주제작의 경우에 적용하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로 구분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건전한 저작권제도의 확립과 외주제작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 등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외주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원칙)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방송사는 제작사의 제작과정에 입회하여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송사의 입회로 인해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 ⑤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제작진 및 제작진 이외의 제3자 등의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의 관리 감독과 안전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작사는 실연자 및 제작진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⑥ 제작사는 방송사에게 대본, 큐시트, 촬영원본, 편집원본(M/E 분리된 Clean Picture), 음악·문예물·영상자료의 사용내역 및 방송사가 지급하는 제작비에 구입비용이 포함된 영상자료 및 방송소재 등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명 :
2. 제작 형식 :
3. 프로그램 주요내용 :
4. 제작 편수 : 회 (비드라마의 경우 계약 기간 : ~)
5. 방송일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
6. 길이 : 매 편당 분(편성시간 기준)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 연출자 :
 - 작가 :
 - 주요출연 :
8. 기타 :

제5조 (제작비)

- ① 제작비는 프로그램의 분량, 장르, 제작 기여도, 저작권 귀속,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방송사는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으로 (총액 원/회당 원)을 지급한다.
- ④ 방송사는 전항의 제작비용을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방송횟수에 따라 제작사에게 지급한다.
- ⑤ 제작사는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하고 제작비 지급자료를 (2일)내에 방송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방송사는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금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프로그램 제작비의 (20%)/1회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50%))

2. 지급시기 년 월 일

㉗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작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에게 제작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㉘ 제작비 세부내역은 부록<서식 1>과 같다.

㉙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편성사정에 따라 증감될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다만,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 완성 분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㉚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제작비 집행 실적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선급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은 제외한다)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작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7조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보증)

① 방송사는 본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의 원고료와 실연자의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방송 개시일로부터 본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증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른다.

<방송사-실연자 출연료 지급보증 단체협약 내용>

- 60분물 이상 편성 드라마 :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 40분물 이하 아침 및 일일연속극 : 일금 삼억원정(₩300,000,000)
- 10부작 이하 특집극 및 단막극 : 총 계약금액의 5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②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는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외주 제작비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제작사가 실연자에 대한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제작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제작사의 외주제작비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회당 외주 제작비를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총 외주제작비 중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는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 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의 범위 안에서 작가 및 실연자 등이 청구하는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추가비용)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권)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1>과 같이 기여도에 따라 권리배분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귀속하고 그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 또는 적절한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① 방송사와 제작사간 권리·수익 배분의 범위·기간 등은 <별지1>을 사용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를 통해 수정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별지1>에 따라 배분한다. 수입의 배분과 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③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 원본은 방송사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사와 제작사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상호 적극 협조하되 세부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⑥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프로그램의 권리 보증)

-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사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협조해야 하며,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과 방송관계법령과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 각본,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 프로그램 관련 권리나 내용 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거래 제한 및 이중제작의 금지)

- ① 방송사는 제작사로 하여금 자신(자신의 계열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을 통해 제작 중이거나 제작·납품하여 방송 중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작사의 계약 불이행 또는 제작비 미지급 등으로 프로그램 납품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방송자료 등의 지원)

-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게 방송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 <서식 1>의 사항(이하 “방송자료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송자료 등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작사는 방송사의 방송자료 등을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서식1>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편집 등)

-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의 수정, 삭제, 그 밖의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 ②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 제15조 (제작협찬)
-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협찬내용 및 협찬조건에 대해 사전에 방송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방송사가 협찬에 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작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작사는 협찬사 고지의 위치, 크기, 내용 및 방법 등은 방송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③ 제작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에 위반되는 협찬을 유지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반 결정시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 ④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무리한 협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후 제작사의 협찬유치에 대해 방송사는 추후에 기 책정된 제작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작사는 무리한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간접광고)
-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하여 그 수입을 배분한다.
-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 ① 방송사는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의 제작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계약서에 제작비를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2.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3. 방송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 제18조 (납품 및 검사)
- ① 제작사가 납품을 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 ② 제작사는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을 기본으로 하되 방송사와 협의하여 정한 납품기일에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③ 완성된 프로그램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는 제작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문제가 방송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전 항에 따른 문제의 수정,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방송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수령일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제작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책임의 귀속)

-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제18조에 따라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재위탁)

-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방송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재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다만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명칭 등 사용)

-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제작장비, 명함, 차량 등에 방송사의 로고를 부착·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방송사의 임·직원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명칭 등의 사용방법과 기준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 ① 방송사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계약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방송사는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때에는 제작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납품 완료된 프로그램을 제작사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제24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프로그램이 제18조제1항의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제작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 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의 행위가 제23

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횡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3. 프로그램 작가 및 제작 스태프 등의 책임과 의무 수행 문제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4. 제18조제1항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제5조제10항의 자료가 허위일 경우 발생하는 손해

⑤ 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프로그램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제작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⑥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6조 (프로그램 출품 및 수상)

-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대회 또는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 수상의 주체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 (채권양도의 금지)

제작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비밀 유지)

-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 플롯 등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

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30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1조 (변경신고)

- ①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서식1>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1>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 송 사	제 작 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 · 판매 등		
자료 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외주제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외주제작의 경우에 적용하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로 구분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건전한 저작권제도의 확립과 외주제작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 등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권 구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 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원칙) ①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상호 합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제작사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는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전제작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 및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프로그램 구매 내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구매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 이름 :
2. 프로그램 주요내용
3. 장르 구분 :
4. 방송 일시 :
5. 제작 편수 : 편당 ()분물 ()편
6. 연출 및 작가 : 연출 (), 작가 ()
7. 주요 출연 :

제5조 (구매금액의 산정 및 지급)

- ①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연기자, 작가, 스태프, 제작시설 등 일체의 제작비는 제작사가 조달하고 관리한다.
- ② 방송사가 동 계약으로 제작사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의 구매 금액은 (총액 원/회당 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 ③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후 제작사의 청구에 의해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방송사의 지급기준에 의거 제작사의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방송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사가 지급해야 하는 원고료, 출연료,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구매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 ① 편성시간의 증감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본 계약상의 제작 편수는 프로그램의 품질과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제7조 (계약이행보증)

- ① 방송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작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8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기여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권리의 처리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의 이용)

- ①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영권료를 지급한 경우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방송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을 초과하는 방송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약에 따른 방송의 경우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프로그램의 권리 보증)

-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사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과 방송관계법령과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각본,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 프로그램 관련 권리나 내용 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방송사가 제8조의 권리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방송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집 등)

-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의 수정, 삭제, 그 밖의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 ②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제12조 (인도 및 시사)

- ① 제작사는 100% 제작이 완료된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

평가)	<p>의된 프로그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방송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 제작사가 제작하여 인도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시사·평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제13조 (납품)	<p>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방송 예정일 2일 전 업무 시간 내까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수정 보완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납품은 방송 예정일 1일 전 업무 시간 내 (09:00~18:00)까지 이행해야 한다.</p>
제14조 (명칭 사용 등)	<p>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제작장비, 명함, 차량 등에 방송사의 로고를 부착·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방송사의 임·직원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명칭 등의 사용방법과 기준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p>
제15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p>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제작사가 제12조제2항의 수정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

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3. 프로그램 작가 및 제작 스태프 등의 책임과 의무 수행 문제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④ 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프로그램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제작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⑤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17조 (책임의 귀속 및 제작 책임)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3조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제18조 (프로그램 출품 및 수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대회 또는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상의 주체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0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 (변경신고)

①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의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의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형태 외에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계약 형태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도급·위탁 받은 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의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하도급 업체, 스태프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다)에게 상기의 방송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분물,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ENG(), 6mm()	
	방송일시		
계약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 임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 임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요일
	□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 금 주 : 계좌번호 :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_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4대 보험 가입)	<p>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에 각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자신의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p>
제5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p>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스태프'의 성별, 종교, 성적체성, 장애, 연령, 조합원여부, 단기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⑥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p>⑦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p> <p>⑧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6조 ('스태프'의 의무)	<p>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p> <p>③ '스태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p>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부당한 계약
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역무제공 부당
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정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9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 단, 사업자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과 1일의 근로시간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스태프’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 하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의 간격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스태프'에게 정기 주휴일 및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금의 결정 지급)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급여를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통상 지급되는 임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 1. 월 기본급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 2. 월 기본급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스태프'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급여를 정한다.
 - 3.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되, 그 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방송사의 경우)이나, 납품한 '프로그램'(외주제작사의 경우)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따른 급여 산정에 대해 월별 약정한 회차 또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임금(시급×초과근로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월별 회차(또는 근로일수)가 약정한 회차(또는 근로일수)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2조에서 정한 임금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서식1>에 따라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물품구매비용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스태프'는 전항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인정되는 영수증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상호 간에 협의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장비, 물품 등을 구매, 임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권리의 귀속) ① '스태프'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역무의 결과물에 관련된 저작권 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국내외 방송(지상파, 유선, 위성, DMB 등 모든 형태의 방송 포함), 국내외에서의 판매용 비디오 복제 및 배포, 국내외에서의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한 전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타이틀 명, 서브타이틀 명, 등장 캐릭터의 형상 및 명칭, CF, 행사, 공연물, CD롬 제작, DVD 제작 등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다.
- 제14조 (계약의 연장 및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내용의 연장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용직이거나 주 단위 고용형태의 '스태프'의 경우에는 구술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하에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금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6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스태프'가 만·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역무의 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역무의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계약의 전속)

- ① '스태프'는 본인의 근로 제공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20조 (비밀의 유지)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1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 (변경신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서식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기준

구분	세부사항	적용기준	단가 및 지급기준		
기재비	기본 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 기재비 단가 기준 적용		
인건비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지급기준	기본	06:00~22:00 중 8시간 이내	기본인건비	
		연장 근로	8시간 초과	50% 가산	
		야간 근로	22:00~익일 06:00 사이	50% 가산	
		휴일 근로	1시간~8시간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출장비	식비	1인 1식	6,000원		
	숙박비	1인 1박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비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실제 근무 인원만 지급한다. 식비는 1식 당 6,000원을 지급하되 출장 당일 출발 시간이 07시 이전일 경우에는 조식을 지급한다. 당일 출장인 경우 종료 시간이 19시 이전일 경우에는 석식은 지급하지 않는다. 항공기,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 집행금액(영수증 금액)을 지급한다. 				
적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본팀 출발 시간부터 제작 현장 종료시간까지 현장 장비 미 사용시 : 50%지급(기본사용료) 및 실제 발생 출장비 지급 				
기타	* 기타 사항 상호 합의내용 기입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의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의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형태 외에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계약 형태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도급·위탁 받은 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의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하도급 업체, 스태프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이하 '업무'이라 한다)를 '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하도급 대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계약의 내용)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분물,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ENG(), 6mm()
	방송일시	
계약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탁보수지급	하도급 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조건	
기타		'회사'는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이행보증)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선금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은 제외한다)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을 계약 체결 시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계약 이행을 조건으로 '회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4조 ('스태프' 임금 지급보증)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 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증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하도급 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회사'가 '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의 하도급 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하도급 대금 중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의 범위 안에서 '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하도급 대금)

① 하도급 대금은 수급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

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회사'는 상대방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 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업무지원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회사'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합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

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본 계약이 계속적 거래 계약일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합의 없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8조 (전속거래 제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회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및 지시)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수급내용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④ 야외에서 대규모 인원이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0조 (재하도급)

① '회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동의한 경우, '회사'는 제2조에 따른 수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상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1조 (안전배려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회사'에 속한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

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수행 및
검사)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다.
-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와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때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전 항에 따른 문제의 개선,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위임한 상급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조 (제작도구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제작도구, 역무 공급 등의 매입 및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회사'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부당한 계약
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내용의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행위로 본다.
 -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16조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 ① '회사'는 업무를 위탁받은 후 최저임금 또는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공급원가 (최저임금을 포함한다)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공급원가의 증가분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
-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최저임금·공급원가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한다.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회사'와 하도급 대금 인하여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8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

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1. '회사'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의 수급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다.
-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 ① '회사'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하여 '회사'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 (크레딧)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회사'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 (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품 및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8. '회사'의 인원·장비 및 수급내용 완성물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회사'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 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3조 (손해배상)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㉕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㉖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㉗ '회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의 인도·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수급내용 완성물의 멸실·훼손
4. 제12조제1항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6. '회사'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의 납품·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4조 (지체상금)

① '회사'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납품·제공하지 못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 (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7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업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업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형태 외에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계약 형태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도급·위탁 받은 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하도급 업체, 스태프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스태프’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에게 제2조의 기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스태프’는 본 업무위탁계약서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스태프’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분물,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ENG(), 6mm()
	방송일시	
계약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계약대금지급	계약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조건	
기타		‘스태프’는 제3자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근로(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⑤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태프'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스태프의 의무)

-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③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⑤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임금 지급 보증)

-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제작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스태프'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작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증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계약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계약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스태프'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스태프'가 고용된 제작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스태프'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스태프'의 계약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계약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계약대금 중 정지조건부 계약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고용된 제작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계약대금의 범위 안에서 제작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태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업무조건 등의 보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탁 업무량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업무량을 과도하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계약대금)

① 계약대금은 위탁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협의하여 정하되, 위탁 업무량에 따라 일일업무량 등 업무강도를 반영하여 계약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

하도록 강요하거나, 재료비, 인건비 및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스태프'는 상대방에게 계약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스태프'의 청구가 있으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스태프'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선급금을 제작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계약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스태프'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전속거래 제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스태프'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안전배려의 의무)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고용인에 대한 재해관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수행 및 검사)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스태프'와 협의한다.
- ②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과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수행하는 업무가 프로그램 제작방향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스태프'에게 설명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스태프'의 업무 수행 정도 및 내용을 검사하고 업무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제작 기준이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완성물의 수정요구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스태프'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스태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한 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조 (제작도구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제작도구,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및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스태프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부당한 계약 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 행위로 본다.
 -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16조 (부당감액의 금지)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계약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스태프'와 계약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계약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스태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계약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스태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7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스태프'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 1. '스태프'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 2. '스태프'의 업무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스태프'와 협의하고 '스태프'에게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스태프'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

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스태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 ① ‘스태프’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하여 ‘스태프’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0조 (크레딧)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 8. '스태프'의 인원·장비 및 수탁내용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9. '스태프'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2조 (손해배상)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업무를 완료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 2. 업무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 3. 업무 완성물의 멸실·훼손
 - 4. 제12조제1항의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5.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 6. '스태프'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업무 완료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3조 (지체상금)

- ① '스태프'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성물 및 역무를 납품·제공하지 못한 경우,

	<p>‘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체일수에 계약대금의 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한다.</p> <p>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4조 (권리·의무의 양도)	<p>‘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제25조 (비밀의 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7조 (관할법원)	<p>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p>
제28조 (변경신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제작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상호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와 제25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회사)'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인

법인번호

'스태프'

상호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인

법인번호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원고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작가 집필활동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 작가는 방송프로그램의 합리적 권리관계 및 제작환경 개선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작가'라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사용될 방송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사용될 '원고'의 집필활동 및 사용에 관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를 정하기 위한 표준 집필활동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프로그램'의 '원고' 집필활동과 관련된 원고료 등의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내용	프로그램 명	
	방송 일시/시간/회수	
	제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제작 길이·편수	회당 분물 회
원고 인도 기일		촬영일로부터 일 이전

① 원고료 (지급 시기별)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계 약 금	원	계약체결 후 일 이내
	1차 중도금	원(원고 회분)	방송개시 후 일 이내
	2차 중도금	원(원고 회분)	
	잔 금	원(원고 회분)	방송종료 후 일 이전
	합 계		
② 원고료 (내역별)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기 획 료	원	
	구 성 료	원	
	집 필 료	원	
	자 료 비	원	
	기 타	원	
	합 계		
전속 여부			
기타 사항			

- * 1. 원고료는 ① 지급시기별, ② 내역별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하다.
 2. 상기 사항은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3. 저작권의 2차적 사용에 관하여서는 별도 협의하되, 단체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별도협약 내용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4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본 계약 제3조에서 약정한 집필 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계약기간은 개편, 편성변경, 원고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변경)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작가'의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방송을 완료하지 못하여 작가가 제3조에서 약정한 집필횟수를 초과하여 추가 집필·구성 등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작가'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 창작활동에 따라 발생한 원고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작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집필·구성·기획 등 주요 창작활동 범위 이외의 제작에 필요한 참여 요구 시 '작가'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 ('작가'의 의무)

- ① '작가'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집필·구성 등 창작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조에서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가'는 본 계약 제4조에 의한 계약 기간 중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과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작가'는 자신의 집필원고, 구성안 등 창작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 ④ '작가'는 방송 관련 정부기관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심의규정 및 제작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⑤ '작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계약의 위임 및 대리, 권리·의무 이전 금지)

- ① '작가'는 본인의 집필활동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원고 집필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서면 동의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작가'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집필활동을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작가'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제작과정에서의 원고 사용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제9조 (작가 추가 위촉)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프로

그램'의 제작 및 방송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이를 사전 통지한 후 제3자를 위촉하여 '작가'와 공동으로 집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계약의 원고료를 '작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부당한 계약 취소의 금지)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부당한 원고 인도 거부 등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거나 인도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원고료) ① 원고료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원고'의 집필·구성·기획 등 창작활동의 제공 및 해당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와 상호 협의 하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제3조의 원고료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그 소속단체와 작가의 소속단체 간 별도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5조에 의해 계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에 따라 원고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1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완성 분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해야 할 원고료 중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원고료 지급 보증) ① '제작사'와 방송사가 외주제작계약 체결 시 원고료 등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가'는 원고료 미지급 문제 발생 시 '제작사'와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에게 원고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해당 금액을 '작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경우에 '제작사'는 원고료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2일) 내에 '제작사'와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제3조에 따른 인도기일에 원고를 인도하여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인도 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도된 원고가 계약상의 제작 의도 및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작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협의에 의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에 의한 '작가'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된 원고가 프로그램 제작에 객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원고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저작권)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집필되는 원고, 기획안 등 창작물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창작 또는 제작기여도, 신탁단체와의 협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프로그램의 2차 이용)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방송한 후에 2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별도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가' 또는 작가의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2차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작가가 사용내역 명세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지급 시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원고의 전용)

'작가'는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원고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이외의 자가 기획하는 방송, 영상, 공연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예고 및 홍보를 위하여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 또는 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자)가 수상한다. 단, 극본상으로 선정된 경우 '작가'가 수상한다.

제19조 (협찬 및 광고 등)

'작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프로그램' 내 협찬 및 간접·가상광고 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따라 협조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가'가 원고를 인도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인수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거나, 제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하도록 작가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상대방의 명예 또는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서면으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작가'가 만·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1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작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작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가의 행위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법률비용 포함)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본 계약을 통해 알게 된 프로그램 및 계약 내용 등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지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제23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작가'의 역할에 따른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단,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을 체결한 '작가' 이외의 작가가 있는 경우, 크레딧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5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 (변경통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서면 통지 및
통고)

본 계약 상 양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서면동의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 혹은 전자메일로 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주소 혹은 전자메일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작가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발행인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2019년 6월 18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 팩스 (061) 900-6015

누리집 www.kocca.kr

집필·편집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 산업정책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ISBN 978-89-6514-827-2(93600)

* 본 지침서 내용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비매품/무료



9 788965 148272

ISBN 978-89-6514-827-2